

#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6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개정이유

자치분권 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자치센터 운영 주체 명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 자율성 보장(안 제7조제1항)  
나.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 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 
다. 합 의  
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  
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  
라. 기 타  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80호

가) 예고기간: 2019. 9. 3. ~ 9. 23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 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센터 운영 주체 명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 규정 정비 및 수강료 환불 규정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의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8. 토 론 : 없음.

## 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